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52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의자 : 추경호 · 김기현 · 정동만

권성동 · 이현승 · 김상훈

최수진 · 윤영석 · 배준영

성일종 · 권영진 · 김기웅

박수민 · 최은석 · 박성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 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
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
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
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p>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 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생 략) ② ~ ④ (생 략)</p>	<p>----- ----- ----- -----.</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	--